

2021.4.17. 국가직(나형) 시험 총평

과목명: 세법개론 장 민 선생님

한줄
총평

올해 출제 난이도는 최근 2개년 기준에 비해 다소 쉬운편

▶ 출제 난이도와 경향(최근 2개년 기준, 과거 시험에서 달라지고 있는 부분 중심으로)

올해 출제 난이도는 최근 2개년 기준에 비해 다소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적었고 수업시간에 주로 다루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어 짧은 시간 안에 풀기에는 무리가 없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기 중에 어려운 문제가 다소 속해 있었는데 제거법으로 풀면 답을 구하는데는 지장이 없이 풀 수 있어 잘 준비하신 분들은 고득점도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 출제 유형분석 (주제별, 문제유형별 출제문항 수)

올해 출제범위를 보면

1. 부가가치세법(4) : 과세표준, 공급가액, 환급 및 조기환급, 용역의 공급시기
2. 소득세법(4) : 납세의무, 원천징수, 이자소득 수입시기, 부당행위계산 대상소득
3. 법인세법(4) : 익금불산입 항목, 과세표준신고,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시기
4. 국세기본법(5) :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납세의무성립과 확정, 납세의무 소멸, 국세환급금
5. 국세징수법(2) : 강제징수, 압류
6. 상증세법(1) : 상속재산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총평

▶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변별력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 or 기존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신유형 문항)

올해 문제중에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은 나형 기준으로 문제17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부분으로 외감법 적용으로 감사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지엽적인 부분으로 준비안하신분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특이하게 고난도로 출제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 2022 대비 학습법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학습방향)

2022년 국가직 세법개론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일단 기본적인 수업에서 정리해주는 부분을 모두 암기하시고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엽적인 파트 중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집중으로 준비하셔야 될 듯합니다. 내년부터 세법개론이 세무직에서 필수과목이 되는 만큼 난이도 상승을 염두해 두고 좀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위주로 공부 후 완벽암기가 되어야 고득점이 나올것입니다. 기본수업 후 문제풀이와 핵심요약강의를 듣고 반복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가 나올것이니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직 세법개론(9급) 해답 및 해설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메가공무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답> 나형

01 ③	02 ④	03 ③	04 ①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④	10 ②
11 ①	12 ②	13 ③	14 ②	15 ③	16 ①	17 ④	18 ①	19 ③	20 ②

문 1

-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문 2

- ④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다음은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사유이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문 3

-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문 4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는 다음과 같다.

- (1)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한 때
-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그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 (5)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함)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문 6

- 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③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임.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문 7

- ③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다.

문 8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 | |
|--|
| ㄱ. 양도소득 ㄴ. 기타소득 ㄷ. 사업소득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문 9

- ①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므로 과세표준은 500원이다.
- ②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 ③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무상 견본품은 사업상증여로 부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 ④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 일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은 1,000원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 10

-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문 11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문 12

- ②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문 13

-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문 14

- ②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문 15

-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문 16

-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문 17

-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문 18

- ①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개정된 법률 시행일

문 19

-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문 20

-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즉,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